

# kiri Weekly

2013.2.25 제222호

## 이슈

보험계약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 포커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연두교서의 의미와 시사점

## 금융보험 해설

퇴직연금의 이해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용

## 글로벌 이슈

유럽의 금융거래세 도입과 영향

중국 보험회사 자산운용 제도개선

##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 보험계약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강민규 변호사, 이기형 금융정책실장

## 요약

- 정부는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계약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3년 2월 5일 국회에 입법제안을 하였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음.
- 정부는 입법상 공백이 있거나 해석상 다툼이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보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입법예고하였던 개정사항 중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대립한 보험 사기계약 무효 조항, 보험 양도시 보험자의 해지권 조항, 중복보험에서 보험자의 정산의무 부과 조항 등은 개정안에서 제외하였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 계약 당사자의 행위규제 사항, 보험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보험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인보험과 손해보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행위규제와 관련된 개정사항은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원칙 명문화, 보험모집채널별 권한 명시 조항 등 신설 등임.
  - 보험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개정사항은 약관설명 의무 위반시 계약취소권 행사기간 연장, 보험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 공제계약의 보험계약법 준용조항 신설,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권 행사 금지 등임.
  - 개별 보험종목 관련 개정사항 중 특징적인 점은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 가입 제한적 허용, 보증보험과 질병보험관련 조항 신설,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 추가 등임.
- 동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의결만 남겨둔 상황이므로 개별 보험회사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숙지하여 사전적으로 약관 등 기초서류와 보험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보험계약의 기능수행을 법제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1. 검토배경



- 상법 제4편 보험편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계약법은 사보험 중 영리보험에 관한 법규로서 영리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이므로, 보험계약당사자들에게는 행위규범이 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판단규범이 됨.<sup>1)</sup>
  
- 그러나 현행 보험계약법은 변화된 보험환경에 대응하지 못하여 보험계약 당사자들에 대한 규범력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 그 입법공백을 학계의 논의와 법원의 판결에 의한 해석 등으로 보충하여 왔으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정부(법무부)는 2007년 상법(보험편)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2008년 11월 국회에 상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및 공청회 과정을 거쳤으나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대립하여 4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되었음.
  
- 정부(법무부)는 2007년 개정안을 기초로 일부 수정, 보완하여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12년 6월 15일 입법예고과정을 거쳐 2013년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2013년 2월 5일 국회에 상법(보험편)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을 입법 제안하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음.
  -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最大善意性)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이를 기본적인 행위규범 내지 재판의 원용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 명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였으며, 보증보험·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계약 및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보험산업의 성장·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심신박약자에 대한 사망보험 가입 허용,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sup>2)</sup>
  -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 되었던 개정사항 중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대립하였던 보험 사기 관련 조항, 보험목적 양도 관련 조항, 중복보험 관련 조항 등은 개정안에서 제외되었음.<sup>3)4)</sup>

1) 정찬형(2009), 『상법강위(하)』, 박영사, p. 492.

2)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903629),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 정보광장 입법현황.

- 개정안은 국회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가 수정 또는 변경되거나 재차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해당사자가 이견 대립이 있는 사항은 제외되었고, 나머지 개정사항에 관하여는 논의가 무르익었으며,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입법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안이 큰 변경 없이 입법될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보험회사를 비롯한 보험관계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개정안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개정안에 따라 약관 등의 기초서류와 사업과정을 재정비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보고는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보험계약당사자의 행위규제, 보험소비자보호, 종목별 적용 사항으로 구분·분석하여 개정사항에 관한 이해를 돕고 그 시행시 전망과 유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2. 보험계약체결 등 행위규제 관련 개정안



### 가. 보험계약의 최대선의 원칙 신설

-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최대선의(最大善意)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함(상법 제638조 제2항).
- 최대선의원칙(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은 보험계약이 사행 계약적 위험을 가지고 있어, 보험계약당사자는 보험계약 등에 있어서 고도의 선의성과 윤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임.<sup>5)</sup>
- 위 규정은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험계약법에 명문화한 것으로써 계약 당사자들의 기본적 행위규범이 되고, 소송 등에서 법 규정이 불비할 경우 보충적인 판단규범으로 원용될 것으로 예상됨.

3) 상법보험편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법무부 공고 제2012-156호),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4) 정부가 입법예고한 당초의 보험계약법 개정사항에는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무효, 사기에 의한 보험금 청구시 보험자의 면책, 보험목적 양도시 보험자의 보험계약해지, 양도인 등의 보험목적 양도 통지 의무 위반시 보험자의 면책, 중복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정산의무 부여,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압류 금지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음.  
 5) 박세민(2011), 『보험법』, 박영사, p. 28.

## 나. 판매채널의 권한 규정 신설

- 개정안은 보험대리점에게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청약·해지 등 의사표시의 통지권 및 수령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료 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과 보험증권 교부권만이 있음을 명시하였음(상법 제646조의2).
- 현행법은 보험대리점 등 보험자 보조자들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그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여왔는데 개정안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 다만 개정안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은 부여하지 아니한 점, 보험자가 내부적으로 보험대리점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보험대리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대리점에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다.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에 관한 규정 신설

- 개정안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배상청구를 받고도 그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증가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였음(상법 제722조 제2항 전문).
-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에 관하여 통지하였다면 그 후 배상청구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이를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상법 제722조 제2항 후문, 상법 제657조 제1항).

### 3. 보험소비자 보호관련 개정안



#### 가. 보험약관 설명의무 명시 및 의무위반시 계약취소권 행사기간 연장

- ■ 현행법에는 보험자가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유무에 관한 해석상 다툼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 설명의무와 위반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음.
- ■ 또한 개정안은 보험자가 보험약관 교부·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내”에서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월 이내”로 연장함(상법 제638조의3).
  - 현행법에는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어 그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그 행사기간을 연장한 것임.

#### 나. 소멸시효 기간 연장

- ■ 현행법상 소멸시효 기간은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각 2년, 보험료청구권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각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으로 연장하는 것임(상법 제662조).
  - 현행법상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이 외국의 입법례 등에 비하여 단기이었는데 개정안에서 이를 각 연장하였음. 이로써 보험계약자 등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을 상실하는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생긴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기존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기간 계산시에 유의해야 할 것임.

## 다. 공제에 상법 보험편 규정 준용

- **현행법상 보험계약법이 공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바 개정안은 공제와 이에 준하는 계약도 상법 보험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상법 제664조).**
- **공제는 사실상 보험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법이나 보험업법이 아닌 민법과 해당 공제 법규가 적용되어 왔는데 공제 조합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개정안이 발효되는 경우 공제조합의 건전한 경영과 계약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각 공제 조합의 약관 중 상법 보험편 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라.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 금지규정 신설

- **개정안은 손해보험에서 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를 금지하되, 그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음(상법 제682조 제2항).**
  - 보험자가 손해가 발생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대위권을 행사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들로부터 위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대위의 대상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 왔음.
  - 이에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sup>6)</sup>를 받아 들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금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6) 대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아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의 아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 피보험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경우까지 보험자 대위권 행사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진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은 상법 제682조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함(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등).

## 4. 인보험 및 손해보험 계약 관련 개정안



### 가. 심신박약자의 제한적인 사망보험 가입 허용

- **현행법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모두 무효로 규정하고 있었음.**
  - 현행 규정은 의사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이 보험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나 그 장애 정도에 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심신박약자들의 사망보험 가입을 금지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개정안은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 동의를 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음(상법 제732조).**
  - 개정안으로 인하여 심신박약자 및 그 가족들도 사망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심신박약자는 청약시에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인데 의사능력의 존부 등을 둘러싸고 보험가입의 부당거부, 보험가입시의 의사능력 존부의 입증 등에 관한 분쟁 발생이 예상되고, 사망보험의 특성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그 입증 및 해결이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sup>7)</sup> 심신박약자가 청약시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 추후 이를 입증할 방안 등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위 규정을 악용하여 심신박약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심신박약자를 보호할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나. 다수수익자가 존재하는 생명보험의 고의 사고시 보험금 지급책임 규정 신설

- **현행법은 생명보험에서 다수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가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책임도 면하는지 여부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음.**

7) 한창희, 「상법 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양승규·장덕조·한창희(2009), 『보험법 개정의 관점』, 청목출판사, p. 54.

- 이에 개정안은 상해보험에서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음(상법 제732조의2 제2항<sup>8)</sup>).
- 개정안은 현행법의 입법공백을 메워 보험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사망에 책임이 없는 보험수익자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였는데, 법적안정성을 높이고 무고한 보험수익자의 이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다.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동의 요건 추가

- 현행법은 일반적인 타인의 생명보험<sup>9)</sup>과 달리 단체가 구성원들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 적용을 일괄적으로 배제<sup>10)</sup>하고 있는데,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인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 없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었음(상법 제735조의3 제1항, 상법 제731조).
- 현행법의 입법목적이 단체보험에 운용상 편의를 부여하여 단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범죄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금의 이익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들의 개별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개정안은 단체보험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또는 전자서명법상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보험계약의 유효 요건으로 추가하였음(제735조의3 제3항).
- 위 개정안은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 피보험자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8) 상해보험도 위 규정을 준용함(상법 제739조).

9)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당해 보험계약이 유효함(상법 제731조 제1항).

10) 현행법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법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들의 개별적인 동의 요건을 단체규약으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상법 제735조의3 제1항).

- 다만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또는 단체규약에 단체보험 체결시 피보험자의 개별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들의 동의가 필요 없음.
- 보험자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들의 개별 동의를 요하는 경우 다수의 피보험자들의 동의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는 간략하고 확실한 절차를 마련하고 개정 규정과 충돌하는 단체 보험 약관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라.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 신설

- 개정안은 질병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 질병보험의 준용규정 등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상법 제739조의2, 3).
- 제3보험 중 하나인 질병보험에 관하여 보험계약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입법공백이 존재하였는데 위 규정이 신설되어 법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마. 보증보험 규정 신설

- 현행법은 보험회사들이 보증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보증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보증보험은 보증과 보험의 양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법적성질 및 적용 법률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음.
- 이에 개정안은 보증보험의 준용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상법 제726의5 내지 7).
- 개정안은 보증보험에도 상법 보험편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증적 성격이 강하여 보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부분에 관하여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법상 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음.

## 5. 향후전망 및 시사점



- 개정안은 최근 보험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상 미비점이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를 보완한 것으로써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며, 입법공백을 메워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비록 개정안에는 당초 입법예고한 개정사항 중 보험사기 관련 조항, 보험목적 양도관련 조항, 중복보험에서 보험자의 정산의무 조항 등이 제외되었지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국내외의 흐름,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 보험사기 증가로 인한 사회 문제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입법 필요성에 관하여 향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나아가 간병보험 등 제3보험에 관한 규정, 생명·상해보험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의 경우 면책규정,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 자살의 경우 면책규정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대립하고 있는 문제들도 추후 보험계약법 개정상의 난제로 남아 있음.
- 보험회사, 대리점, 공제사업운영기관 등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여,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운영규칙 등에 대한 개선을 준비하고 보험계약체결에서부터 보험금 지급까지의 일련의 사업과정에 대해 재정비를 하여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소비자만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 시행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 공포 후 시행일까지 동안에 보험상품개발자, 유통채널종사자 등에게 보험계약법의 주요 변경사항, 유의사항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kiri](#)